

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전문개정	1999. 2. 9	규 칙	제736호	
개정	2001. 6. 1	규 칙	제789호	
	2003. 12. 13	의회규칙	제 6호	
	2007. 10. 10	의회규칙	제 16호(의회 회의 규칙)	
	2008. 6. 17	의회규칙	제 18호(의회 회의 규칙)	
일부개정	2015. 9. 14	의회규칙	제 37호(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	
일부개정	2018. 4. 25	의회규칙	제 43호(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	
일부개정	2022. 1. 13	의회규칙	제 49호	
일부개정	2022. 12. 8	의회규칙	제 64호	
일부개정	2025. 2. 19	의회규칙	제 70호	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7, 2015. 9. 14, 2022. 1. 13>

제2조(사무국장)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5. 9. 14>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
2. 문서, 보안,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
4. 의회청사시설,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5. 의회경비 및 방청,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6.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7.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8. 의정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9.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 종합
11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12. 청원, 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13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 총괄

14.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

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5. 9. 14>

1. 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
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
3.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
4.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5.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
6.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

제4조(정책지원관) 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[본조신설 2022. 1. 13]

부칙 <1999. 2. 9 규칙 제736호 전문개정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6. 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2. 13>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규정의 개정) 1.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1항·제20조제3항 중 “운영”을 각각 “의회운영”으로 한다.
2. 광명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제3항 중 “운영”을 “의회운영”으로 한다.
3. 광명시의회포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1조제2항·제4항 중 “운영”을 각각 “의회운영”으로 한다.

부칙 <2007. 10. 10 의회규칙 제16호, 의회 회의 규칙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.
-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명 “광명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을 “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”으로 한다.
- 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08. 6. 17 의회규칙 제18호, 의회 회의 규칙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“광명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「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”로 한다.
- ② 및 ③ 생략

부칙 <2015. 9. 14 의회규칙 제37호,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25 의회규칙 제43호,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
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부칙 <2022. 1. 13 의회규칙 제4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2. 8 의회규칙 제6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5. 2. 19 의회규칙 제7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 〈개정 2025. 2. 19〉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
자치행정교육위원회	자치행정교육위원회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
복지문화건설위원회	복지문화건설위원회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
운영위원회	운영위원회전문위원	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